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81
----------	------

2019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송아량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송아량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수집·관리인 선정 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조문의 문구를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6조)
-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관리인 선발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및 수집관리인 현황

-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임시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 거점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총 1만 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3억8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

구분	2017				2018				2019(9월말)			
	소계	이동식	도시형	클린 하우스	소계	이동식	도시형	클린 하우스	소계	이동식	도시형	클린 하우스
개소	3,466	981	2,366	119	7,717	870	6,727	120	10,499	847	9,548	104
예산 (백만원)	1,131				1,341				1,386			

- 재활용정거장은 재활용품을 수거시간에 맞춰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이동식과 연립,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형 및 주택가 공용지역에 고정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클린하우스 등으로 분류됨.

<서울시 재활용정거장의 형태 및 관련 사진>

		
이동식 정거장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고정식)	클린하우스 정거장(고정식)

-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수집관리인은 2019년 현재 총 66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340명)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5명) 등의 취약계층이 385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장(92명)과 일반 시민(18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수집관리인 구성 현황>

구 분	계	65세 이상	통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
수집관리인(명)	663	340	92	45	186
비율(%)	100	51	14	7	28

- 수집관리인은 현행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장)의 추천으로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수집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루 3~4시간씩 주당 1~2회 근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월 12만원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9개월간은 월 27만원, 나머지 3개월간은 월 12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2) 조례안 검토

- 안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 조사는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
- 현재 수집관리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58%를 차지하고 하고 있지만, 안 제4조와 같이 수집관리인 선발 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에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의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7조제3항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및 겨울철 한파(한랭질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수정하며, 비용 지원 주체가 조례안의 취지와 달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자료]

□ 2019년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9월말 현재)

(단위: 개소)

연번	구별	계	이동식	도시형 생활주택	클린 하우스	수집관리인
계		10,499	847	9,548	104	663
1	종로구	196	13	183	0	
2	중구	157	70	87	0	
3	용산구	90	0	90	0	
4	성동구	408	0	408	0	
5	광진구	454	0	454	0	
6	동대문구	216	16	200	0	22
7	중랑구	160	0	160	0	
8	성북구	84	0	84	0	
9	강북구	1,806	0	1,806	0	
10	도봉구	417	0	417	0	
11	노원구	222	86	133	3	80
12	은평구	327	126	201	0	155
13	서대문구	236	156	80	0	
14	마포구	200	0	200	0	
15	양천구	223	23	187	13	46
16	강서구	436	0	432	4	
17	구로구	98	0	98	0	
18	금천구	340	158	161	21	152
19	영등포구	453	94	310	49	70
20	동작구	186	0	176	10	
21	관악구	1,133	0	1,129	4	
22	서초구	1,500	0	1,500	0	
23	강남구	23	0	23	0	
24	송파구	846	105	741	0	138
25	강동구	288	0	288	0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교통안전 교육을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하고 비용의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81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교통안전 교육을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하고 비용의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함(안 제4조)
- ‘교통안전교육’을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하고 비용 지원의 주체를 시장으로 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제2조 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안 제7조제3항 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u>임시적·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을 말한다.</u></p> <p>3. ~ 4.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u>임시적·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을 말한다.</u></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u>위한 이동식·고정식 거점을 말한다.</u></p> <p>3. ~ 4.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3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u>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3조의2(실태조사)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u>선정한다.</u></p>	<p>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u>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u></p> <p>1. 65세 이상인 사람</p> <p>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u>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u></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p>

<p>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u>제4조에서</u> 선정된 자로 한다.</p> <p>제7조(비용의 지원)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3.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u>제4조에 따라</u> 선정된 자로 한다.</p> <p>제7조(비용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p>	<p><u>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u></p> <p><u>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제6조(지원대상)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비용의 지원)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u>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	---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중 “제4조에서”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u>임시적·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u>을 말한다. 3. ~ 4.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u>위한 이동식·고정식 거점</u>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p>제3조의2(실태조사) <u>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u>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u></p>	<p>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u>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u>제4조에서</u> 선정된 자로 한다.</p>	<p>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u>제4조에 따라</u> 선정된 자로 한다.</p>

제7조(비용의 지원) ① ~ ② (생략)

〈신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